

신산업기술혁신원 운영규칙

제	정	2017. 07. 14
개	정	2019. 02. 21
개	정	2021. 01. 28
개	정	2022. 09. 20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소재) 본 혁신원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산업기술혁신원이라 하며, 아주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1.01.28., 2022.09.20.>

제2조(목적) 이 규칙은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설치하는 신산업기술혁신원(이하 “혁신원” 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01.28., 2022.09.20.>

제3조(사업) ① 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1.01.28., 2022.09.20.>

1. 신산업분야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 산학연협력 기업지원, 지역사회혁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·지원
2. <삭제 2021.01.28>
3.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심사·추천 및 업적평가
4. 산학협력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협의회 운영·관리
5. 산학협력펠로우 위·해촉 및 사업운영 <신설 2019.02.21.>
6. 각종 산학협력지표 개발 및 연구사업 수행
7. 산학연협력 기업협업센터(ICC) 및 지역사회혁신 성과 확산 관련 산하기관 운영 지원
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이외에 신산업기술혁신원장(이하 “원장” 이라 한다)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(이하 “단장” 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1.28., 2022.09.20.>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혁신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담조직을 둔다. <개정 2021.01.28>

1. 혁신원장 1명
2. 운영위원회
3.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 약간 명

- 제5조(원장)** ① 원장은 혁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01.28., 2022.09.20.>
- ② 원장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직제운영 및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1.01.28., 2022.09.20.>
- ③ <삭제 2022.09.20.>

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6조(구성)** ① 혁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01.28>
- ② 위원회는 원장과 혁신원 산하 조직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원장이 단장에게 추천하여 추가 위촉한 5인 내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 <개정 2021.01.28., 2022.09.20.>
- ③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-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<개정 2021.01.28>

1. 혁신원 업무의 추진 및 지원 방안
2. 혁신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
3. 혁신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준의 제·개정 심의
4. 기타 혁신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운영사항

제9조(산학협력중점교수) ① 혁신원에 소속되는 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21.01.28>

1. 채용형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: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전임교원으로 한다.
2. 채용형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: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비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, 직급, 교수업적평가, 재임용, 승진임용, 정년보장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주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.

③ 원장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중에서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, 주임교수는 원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수업적평가위원회) ① 혁신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아주대학교 교원업적평가관련 규칙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01.28>

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제11조(산학협력펠로우) 산학협력 혁신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협력펠로우를 위촉하여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, 산학협력펠로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행정직원) ① 혁신원에는 혁신원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조교 임용은 아주대학교 조교임용관련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1.01.28>

제 5 장 재 정

제13조(재정) 혁신원의 재정은 정부 출연금, 교비, 산학협력단 수익기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한다. <개정 2021.01.28>

제14조(예산 및 결산) 혁신원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준수한다. <개정 2021.01.28>

제 6 장 보 칙

제15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혁신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1.01.28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<신설 2019.02.21.>
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9.02.21.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1183: 2022.09.20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